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씨비알이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자산운용

제1조(제정 목적) 이 기준은 씨비알이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을 바탕으로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사안을 관리하고자 제정되었다.

제2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방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2.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 등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여부를 식별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 관계에 관한 중요 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 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한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2.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판단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제4조에서 정함)에게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설정) ①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경영·부수업무, 구체적인 업무 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각 업무단위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설정한다. 부문별 차단 대상 정보는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고유재산운용

2. 집합투자업무·투자자문/일임업무

3.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4조에서 정의함)이 지정하는 업무

② 제 1항의 업무단위의 책임자는 해당 부문의 부문별 책임자(본 기준에서 “부문별 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③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책임자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본 기준에서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부문별 책임자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정보교류통제 관련 담당 조직 설치·운영) ①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기위해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으로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독립적인 부서가 아닌 경우 준법감시인 지원인력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으로 준법감시인을 지정한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교류차단 일반원칙, 차단 방식, 예외적 교류 절차 수립 및 운영

2. 이해상충 유형 분류 및 대응방안 마련

3. 교육 및 정보교류통제 관련 공시의무 이행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 관련 이슈 처리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정보교류통제업무 중 일부를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부당 정보이용 금지, 선행 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한다.

제5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절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사용내역 보고 등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한다.

제6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장치)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3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한다.

1.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독립된 부서 구분 및 독립적인 업무처리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처리되지 않거나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예외적 교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별표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5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제8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 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 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 대표이사

2. 준법감시인

3. 위험관리책임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 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후선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 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거래주의·제한 상품목록 지정기준 및 지정) ①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식 별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이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거래주의 상품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 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1. 거래주의 상품에 대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부분 또는 임직원의 범위 지정 및 감시

2. 거래주의 상품 매매에 대한 사전승인절차를 통한 이해상충 여부 감시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 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 여 거래제한 상품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제11조(이해상충 우려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 래의 유형 및 각 거래 유형에 대한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제한)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 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6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 등 관련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7조는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규정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 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다음은 이해상충 가능한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이며 회사의 통제 대상은 이에 국한하지 않음. 금지된 유형의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내부 조사 등의 조치가 취해짐.

| 거래 유형 및 예시 | 대응 방안 |
|--|---|
| 펀드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계열사에 의뢰 | 금지 |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펀드 자산 관련된 서비스를 outsourcing 예)펀드가 부동산 취득/매각 시 계열사가 매수/매각 자문 | 금지. 계열사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체제도 운영하며 당사도 펀드에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하에 가능 |
|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금지 |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금지 |
|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금지 |
|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금지 |
|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 금지 |
| 운용역의 자기운용펀드에의 투자 |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준법감시인의 분기별 이해상충 여부 조사 후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
| 고유재산의 회사운용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 사전에 정한 한도 내에서만 투자 가능 준법감시인의 분기별 이해상충 여부 조사 후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업무상 영향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선물/접대도 금지 선물/접대에 대한 엄격한 사전승인 제도 운영 준법감시인이 매년 현황을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 |

위에서 설명된 방안 이외에 회사는 투자자, 주주, 임직원의 상호간 또는 구성원 간 각종의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원칙을 시행하고 있음. (내부통제기준)

1. 고객 이익 우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이해상충 문제의 숙지 및 차단

가.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가.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의 관리

비밀정보는 정보차단벽에 의한 접근 차단, 정당한 권한, 비밀유지 의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need to know basis, 통제 및 보안시스템, 준법감시인의 엄격한 통제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 회사는 내부 규정 이외에 CBRE Group의 Standard of Business Conduct, Investment Management Policies & Procedures (중 계열사 서비스, 이해상충관리, 내부거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음.